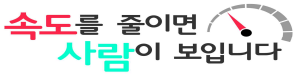
		<h1>보도자료</h1>	
		<b>배포일시</b>	<b>2019. 1. 21.(월) / 총 5매(본문 3, 붙임 2)</b>
<b>담당 부서</b>	교통안전복지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박정수, 사무관 홍철, 주무관 홍성욱 • ☎ (044) 201-3863, 3864
<b>보도일시</b>		2019년 1월 2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20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윙바디·렉카차·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...2020년부터는 과태료 부과

- 올해부터 4축 이상(차축 4개 이상(가변축 포함)), 윙바디(특수용도형), 렉카차(구난형), 이삿짐 사다리차(특수작업형)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버스,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줄임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(LDWS: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)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였다.

### < 의무화 대상 확대차량 >

구분	기존	확대 (기존 포함)	
		차종별	세부 용도별
화물차	3축 이하	4축 이상	- 차축 4개 이상(가변축 포함)
	일반형(카고트럭), 밴형	특수용도형	- 윙바디, 냉동탑차, 크레인자동차, 유압적하기 자동차, 활어운송용 자동차
특수차	3축 이하	4축 이상	- 차축 4개 이상(가변축 포함)
	견인형(트랙터)	구난형	- 렉카차
		특수작업형	- 이삿짐 사다리차, 고소작업차

-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·특수자동차 등 7.5만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(최대한도 40만 원)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

○ 그간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안 되어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.

○ 이에 따라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(교통안전법 시행규칙, '19. 1. 18. 시행)하여 20톤 이상 화물·특수 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\*하였으며,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총 15.5만대로 확대되었다. (기존 7.5만대 + 확대 8만대)

\* 4축 이상 자동차,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, 구난형·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

\*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

□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·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.

○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,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'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\*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.

\* 의무화 확대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

□ 한편,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.

○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, '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.

○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.

□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 봄 행락철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토록 하여 조기 장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.

-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등의 학생들을 비롯하여 직장인, 행사객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, 전세버스 업체는 봄 행사철 전에 장치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.
-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,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과 미비점도 면밀히 살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연내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-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음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홍철 사무관(☎ 044-201-386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참고**

**대형 사업용 차량 유형별 분류**

□ 화물차

유형	정의	주요 차량	비고
일반형	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	 <p>카고트럭</p>	기존 대상
덤프형	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	 <p>덤프트럭</p>	제외
밴형	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	 <p>밴형 트럭</p>	기존 대상
특수용도형	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,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	 <p>사료운반트럭</p>  <p>윙바디트럭</p>	신규 확대

□ 특수차

유형	정의	주요 차량	비고
견인형	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	 <p>트랙터</p>	기존 대상
구난형	고장·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·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	 <p>렉카</p>	신규 확대
특수작업형	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	 <p>고소작업차</p>	신규 확대

□ 승합차

구분	좌석형	입석형
정의	별도 입석 공간이 없는 승합차	입석 기준에 따라 입석 면적이 있는 승합차 *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7
주요 차량	광역급행형·직행좌석형·좌석형 시내버스, 시외버스 등	일반형 시내버스, 농어촌버스, 마을버스 등
사진		